

의안번호	2203085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7.
추 계 번 호	24G307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적용기한 5년 연장 외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삭제함에 따라 세수는 2025년 17억원, 2039년 5억원 등 2025년부터 2039년까지 15년간 총 12조 4,013억원(연평균 8,26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·관세

(단위: 억원)

	'25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조)		-1,477	-2,954	-4,431	-5,908	-7,385	-5,908	-4,431	-2,954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	-14,088	-14,976	-15,859	-16,763	-17,668			
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19조)		-255	-286	-321	-360	-406			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29조의6)							-61	-62	-62
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제도 폐지(안 제96조의3㉠)		-1,059	-1,059	-1,059	-1,059	-1,059			
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(안 제97조의9 제1항)	-11	-11	-11	-11	-11				
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확대·연장(안 104조의24)		-9.8	-19.7	-29.5	-39.3	-49.2	-49.2	-49.2	-44.3
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18조의2)	-5.7	-5.7	-5.7	-5.7	-5.7				
합계	-17	-16,906	-19,311	-21,716	-24,146	-26,567	-6,018	-4,480	-2,998

	'34	'35	'36	'37	'38	'39	누적	연평균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조)	-1,477						-36,925	-4,103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						-79,354	-15,871
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19조)							-1,627	-325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29조의6)	-63	-64					-312	-62
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제도 폐지(안 제96조의3㉠)							-5,295	-1,059
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(안 제97조의9 제1항)							-53	-11
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확대·연장(안 104조의24)	-39.3	-34.4	-24.6	-14.8	-9.8	-4.9	-418	-30
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18조의2)							-29	-5.7
합계	-1,579	-98	-25	-15	-10	-5	-124,013	-8,268

주: 각 항목의 연평균 금액은 세수효과가 존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, 합계의 연평균 금액은 2025~2039년을 기준으로 계산함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창업중소기업 등에	○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	대한 세액감면)		
2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3	안 제19조 (성과공유 중소기업 의 경영성과급에 대 한 세액공제 등)	○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4	안 제29조의6 (중소기업 청년근로 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	○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-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* * 청년 근로자: 중소기업 90%, 중견기업 50% - 청년 외 근로자: 중소기업 50%, 중견기업 30% - 적용기한: (현행) '24.12.31. → (개정안) '29.12.31.	
5	안 제96조의3제1항 (상가임대료를 인하 한 임대사업자에 대 한 세액공제)	○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폐지 - (현행)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%(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- (개정안) 2020년 1월 1일부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%(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	
6	안 제97조의3제1항 (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)	○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% 특례적용 ○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
7	안 제97조의9 제1 항 (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 도한 토지에 대한 과 세특례)	○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%를 감면하는 제도에 대하여, 적용기한을 5년 연장 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까지 -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까지	
8	안 제104조의24 (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)	○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감면율: (완전복귀·수도권 밖 부분복귀) 7년 100% + 3년 50% (수도권 내 부분복귀) 3년 100% + 2년 5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9	안 제118조의2 (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)	○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	○	
2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3	안 제19조 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	○	
4	안 제29조의6 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	○	
5	안 제96조의3제1항 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6	안 제97조의3제1항 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	×	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 등을 통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전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,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
7	안 제97조의9 제1항 (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8	안 제104조의24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	○	
9	안 제118조의2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
- (안 제6조)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(2022~2024년(전망)¹⁾) 연평균 감면액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
 - －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(안 제10조)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3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4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－ 단, 2024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분포는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R&D 세액공제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²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 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－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R&D 지출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 숫자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2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- (안 제19조)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기업)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경영성과급 총지급액의 최근 3년(2022~2024년(전망)) 연평균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(근로자)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(전망)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- (안 제29조) 중소기업 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, 공제금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제도시행 6년차부터 세액감면액 발생
 - 안 제29조의6에 따라 2025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·중견기업의 청년 근로자 등은 만기 공제금을 2030년에 수령하고, 해당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31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현행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이므로, 적용기한 5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31~2035년 동안 발생

- (안 제96조)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함
 -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6년에 발생하고 이후 일몰기한이 폐지되거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함(징수기준)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의 조세지출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함
 - 2023년(귀속기준)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

- (안 제97조의3)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
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10% 감면의
일몰 연장 시 세수효과는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
- (안 제104조의24)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확대·연장에
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
(전망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
 -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7년(5년 100% 감면, 2년 50% 감면)간 국내
복귀기업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 - 향후 국내복귀기업은 모두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하고, 국내 복귀
한 해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10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현행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은 7년간
100%, 이후 3년간 50%가 적용
 - 2023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업종요건이 변경되었
으나, 세수효과 추계 시 업종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(안 제118조의2)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
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간
(2022~2024년(전망)) 연평균 감면액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향후 국내복귀기업은 모두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하는 것으로 가정
 - 2023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업종요건이 변경되었
으나, 세수효과 추계 시 업종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조)

(1) 추계방법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실적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(전망) ¹⁾	3년('22~'24) 평균 감면액
계	6,080	7,629	8,446	7,385
법인세	2,561	2,788	2,640	2,663
소득세	3,519	4,841	5,806	4,722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된 숫자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방법)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(2022~2024년) 감면액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1년 단위 환산액: (법인세) 533억 원 = 2,663억 원 ÷ 5년

(소득세) 944억 원 = 4,722억 원 ÷ 5년

－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: 법인·소득세, 2026~203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	'34
'25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533	533	533	533	533	—	—	—	—
	소득세	944	944	944	944	944	—	—	—	—
'26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—	533	533	533	533	533	—	—	—
	소득세	—	944	944	944	944	944	—	—	—
'27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—	—	533	533	533	533	533	—	—
	소득세	—	—	944	944	944	944	944	—	—
'28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—	—	—	533	533	533	533	533	—
	소득세	—	—	—	944	944	944	944	944	—
'29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—	—	—	—	533	533	533	533	533
	소득세	—	—	—	—	944	944	944	944	944
계		1,477	2,954	4,431	5,908	7,385	5,908	4,431	2,954	1,477

(2) 추계결과

-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시, 법인·소득세 수는 2026년 1,477억원, 2034년 1,477억원 등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간 총 3조 6,925억원(연평균 4,10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	'34	누적	연평균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액감면 적용 기한 연장(안 제6조)	법인세	-533	-1,065	-1,598	-2,130	-2,663	-2,130	-1,598	-1,065	-533	-13,315	-1,479
	소득세	-944	-1,889	-2,833	-3,778	-4,722	-3,778	-2,833	-1,889	-944	-23,610	-2,623
	계	-1,477	-2,954	-4,431	-5,908	-7,385	-5,908	-4,431	-2,954	-1,477	-36,925	-4,103

나.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 개요) R&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(당기분)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 - 신성장·원천기술 R&D: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0%, 중소기업 30%
 - 국가전략기술 R&D: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- ※ '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 3 (한도 10%)' 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

[표 5]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	증가분	25	40	50
	당기분	최대 2 ³⁾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	20~30	20~30 ¹⁾	30~40
국가전략기술		30~40	30~40	40~50

주: 1)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, 공제율 25~40% 적용함

2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'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' 로 계산함

□ (공제실적) 2023년 R&D 세액공제 실적은 4조 6,302억원, 2024년 실적(잠정치)은 3조 588억원 수준

○ 2023년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(법인세)은 다음과 같음

[표 6]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	14,852	2,886	6,023	23,760
신성장·원천기술 R&D	266	255	8,971	9,492
국가전략기술 R&D	32	9	11,927	11,968
계	15,150	3,150	26,920	45,221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4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3조 588억원으로 2023년 대비 34.6% 감소한 수준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○ 단,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7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신성장·원천기술>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194	206	218	231	243
중견기업	186	197	209	221	233
대기업	6,530	6,941	7,351	7,770	8,190
계	6,910	7,345	7,778	8,222	8,666

<국가전략기술>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24	25	26	28	29
중견기업	7	7	8	8	8
대기업	8,682	9,229	9,773	10,330	10,888
계	8,712	9,261	9,807	10,366	10,926
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 전망(t-1)	6.0	6.3	5.9	5.7	5.4

주: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-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 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&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는 일반 R&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
[표 8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
신성장·원천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 (A)	938	997	1,056	1,117	1,177
	신성장·원천 공제율 기준 (B)	6,910	7,345	7,778	8,222	8,666
	차이 (B-A)	5,971	6,347	6,722	7,105	7,489
국가전략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 (A)	595	633	670	708	747
	국가전략 공제율 기준 (B)	8,712	9,261	9,807	10,366	10,926
	차이 (B-A)	8,117	8,628	9,137	9,658	10,1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말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는 2026년 1조 4,088억원, 2030년 1조 7,668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조 9,354억원(연평균 1조 5,87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14,088	-14,976	-15,859	-16,763	-17,668	-79,354	-15,871

다.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19조)

(1) 추계방법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0]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실적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(전망) ¹⁾
계	112	180	204
법인세	69	116	137
소득세	44	64	67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방법)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다음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

- (기업)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경영성과급 총지급액의 최근 3년(2022~2024년) 연평균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총액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음*

* 공제율: ('21년 이전) 10%, ('22년 이후) 15%

[표 11] 경영성과급 총지급액 추정¹⁾

(단위: 억원, %)

	2022	2023	2024(전망)	연평균증가율 (’22~’24)
법인세 공제실적	69	116	137	-
경영성과급 총지급액(추정)	690	773	913	15.1

주: 1) 징수기준에 따라 2023년 실적부터 상향된 공제율(15%)이 적용

- 개정안에 따른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공제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실적(전망)을 바탕으로 경영성과급 총지급액의 최근 3년 연평균증가율(15.1%)을 적용하여 추계

[표 12] 법인세 공제액 추정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
법인세 공제액	137	158	181	209

- (근로자)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(전망)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조세지출예산서상 소득세 감면실적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(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공제)도 포함되어 있으나, 해당 실적을 구분하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 실적은 모두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13] 소득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 %)

	2023	2024(전망)	전년 대비 증가율
소득세 감면실적	64	67	4.7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른 향후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실적(전망)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(4.7%)을 적용하여 추계

[표 14] 소득세 감면액 추정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
소득세 감면액	67	70	73	77

(2) 추계결과

-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5년 연장 시, 법인·소득세수는 2026년 255억원, 2030년 40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627억원(연평균 32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	'26	'27	'28	'29	'30	누적	연평균
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19조)	법인세	-181	-209	-240	-276	-318	-1,224	-245
	소득세	-73	-77	-80	-84	-88	-403	-81
	계	-255	-286	-321	-360	-406	-1,627	-325

라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29조의6)

(1) 감면 실적

- (제도 설명)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,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
 - 현행 성과보상기금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(중견)기업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,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, 소득세에 일정 비율 만큼 세액을 감면
 - 청년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: 중소기업 90%, 중견기업 50%
 -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: 중소기업 50%, 중견기업 30%
 -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, 공제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제도시행 6년차부터 세액감면액 발생
 - 내일채움공제(5년 만기)는 2014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부터 공제사업 만기 수령자가 발생하며,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0년부터 발생

-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(5년 만기)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며,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4년부터 발생
-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(3년 만기)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며,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발생

[표 16]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현황

구분	내일채움공제	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	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
가입대상	중소(중견)기업 핵심인력	중소(중견)기업 청년근로자	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근로자
가입기간	5년		3년
적립금액	5년간 2,000만원 이상 (핵심인력 720 + 기업 1,500)	5년간 3,000만원 이상 (청년 720 + 기업 1,200 + 정부 1,080)	3년간 1,008만원 (근로자 504 + 기업 504)
우대혜택	만기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¹⁾		
시행일	2014.8.21.	2018.6.1.	2021.10.18.
사업기간	계속사업	~2022년(한시 사업)	계속사업
주관부처	중소벤처기업부		중기부+고용부

주: 1) 청년내일채움공제(2년형, 3년형)에 가입하여 만기를 채운 후,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(가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예치해야 함)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적용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(감면실적) 성과보상기금의 공제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3년 기준 38억원, 2024년은 157억원으로 전망됨
-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2020년 처음 발생하고, 2024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
 - 2024년 전망치는 2024년(2023년 귀속) 연말정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된 잠정치

[표 17]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년 (실적)	2022년 (실적)	2023년 (실적)	2024년 ¹⁾ (전망)
소득세	29	31	38	157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□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조세지출 실적과 공제사업별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

-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(5년 만기)에 2025년 가입 시, 만기 공제금 수령자는 2030년부터 발생, 소득세 감면은 2031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추계대상에서 제외
 - －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8년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음
 - －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(3년 만기)는 2024년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여,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발생할 예정
 - － 다만,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 수(2021~2023년 연평균 583명)가 적고, 기존 공제사업들의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*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*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(2023년 기준: 내일채움공제 39.3%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7.0%)
- 따라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계
 - －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을 활용하되 동 실적에는 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 사업별 조세지출액을 구분할 필요
 - － 사업별로 조세지출액이 구분되어 집계되지 않으므로, 사업별 가입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

(3) 추계 결과

- 2024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따른 조세지출액 실적(157억원) 중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약 57억원으로 추정
 - 2023년의 조세지출액 실적은 대부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이므로, 2023년 조세지출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증가율(2022년 대비 2023년 증가율)을 적용하여 2024년도 조세지출액 추정
 -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, 2023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(4,656명)는 2022년(3,089명) 대비 1.5배 규모로 증가
 - * $57\text{억원}(2024\text{년}) = 38\text{억원}(2023\text{년}) \times 1.5$
 - 2023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은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4년에 이루어짐

[표 18]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

(단위: 명, 억원)

가입 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가입자 수	9,619	11,841	8,856	10,929	11,598	12,152	12,422
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(가입연도 +5년)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
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	3,089	4,656	-	-	-	-	-
소득세 감면 연도 (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+1년)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득세 감면액	38	57 ¹⁾	-	-	-	-	-

주: 1) 만기 공제금 수령자를 증가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
 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에도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 - 먼저 일몰 연장에 따른 2025~2029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를 추정하고, 최근 연도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추정
 - 2025~2029년 가입자 수는 2023년 가입자 수에 최근 5년(2018년~2023년) 가입자 수 연평균 증가율(0.96%)을 적용하여 추정
 -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는 2025~2029년 가입자 수(추정치)에 가장 최근 연도 가

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(2023년 0.393=4,656명/11,841명,
[표 4] 참조) 적용하여 추정

-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031~2035년 연간 소득세 감면액은 61~6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

[표 19]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및 소득세 감면액 추정

(단위: 명, 억원)

가입 연도	2025	2026	2027	2028	2029
가입자 수	12,662	12,784	12,907	13,032	13,157
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(가입연도 +5년)	2030	2031	2032	2033	2034
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	4,979	5,027	5,075	5,124	5,173
소득세 감면 연도 (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+1년)	2031	2032	2033	2034	2035
소득세 감면액	61	62	62	63	64

-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31~2035년 5년간 3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2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31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조세특례 일몰 연장 (안 제29조의6)	-61	-62	-62	-63	-64	-312	-62

마.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6조의3제1항)

(1) 조세지출 실적

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2023년 1,010억원이었으며 2024년은 1,059억원으로 전망³⁾
- 2020년 3월 시행(공제대상기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, 공제율 50%)
 - 2021년 1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1년 6월까지로 1년 연장)
 - 2021년 3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1년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) 및 공제율 인상(50%→ 70%, 단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50%)
 - 2021년 12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2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)
 - 2022년 12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3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)
 - 2023년 12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4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)

[표 21]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
(단위: 억원)

구분	2020년 (실적)	2021년 (실적)	2022년 (실적)	2023년 (전망)	2024년 (전망)
소득세	0	1,448	1,597	804	845
법인세	2	225	373	207	214
계	2	1,672	1,970	1,010	1,059

자료: 각 연도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의 2024년 조세지출 전망액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- 동 조세지출의 2024년 전망치는 2023년 기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을 바탕으로 2024년 상반기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규모가 반영되어 있으므로, 향후에도 동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3) 정부,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2023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일몰을 폐지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 -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0년 5년간 총 5,295억원(연평균 1,059억원)으로 예상됨
 - 2023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변동 가능함

[표 2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·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제도 폐지(안 제96조의3①)	-1,059	-1,059	-1,059	-1,059	-1,059	-5,295	-1,059

바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 97조의3제1항)

-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동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, 개정안은 해당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임
-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 등을 통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전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함
 - 최근까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살펴보면, 동 특례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은 ‘추정곤란’으로 집계되어 있어, 동 추계에 활용할 수 없음

[표 23]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실적

	2021	2022	2023	2024p	2025p
감면액	추정곤란	추정곤란	추정곤란	추정곤란	추정곤란

주: p는 전망치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또한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양도현황 등에 대한 자료도 부재하여, 향후 양도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함

사.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
(안 제97조의9 제1항)

□ (조세지출 실적)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% 감면으로 인한 소득세 감면액은 2022년 11억원, 2023년 10억원으로 연평균 10.5억원 수준임

- 동 제도는 2021년 3월 16일 제도 신설 이후 양도된 토지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, 감면 실적은 2022년부터 발생함

□ (추계방법) 추계기간 감면액은 최근 감면액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함

□ (추계결과)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%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~2029년 5년간 총 53억원(연평균 1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2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(안 제97조의9 제1항)	-11	-11	-11	-11	-11	-53	-11

아.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4조의24)

(1) 추계방법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최근 감면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소득세 감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

[표 25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실적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(전망) ¹⁾
계	8	12	59
법인세	8	12	59
소득세	0	0	0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방법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(전망)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(법인세)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4.9억원* + 100% 감면액 9.8억원**

* 4.9억원 = 59억원 ÷ 12 (5년 × 2 + 2년)

** 9.8억원 = 4.9억원 × 2

—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7년(5년 100% 감면, 2년 50% 감면)간 국내 복귀기업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⁴⁾

○ (2025년 국내복귀기업) 7년(2026~2032년) 100% + 3년(2033~2035년) 50% 감면
 (2026년 국내복귀기업) 7년(2027~2033년) 100% + 3년(2034~2036년) 50% 감면
 (2027년 국내복귀기업) 7년(2028~2034년) 100% + 3년(2035~2037년) 50% 감면
 (2028년 국내복귀기업) 7년(2029~2035년) 100% + 3년(2036~2038년) 50% 감면
 (2029년 국내복귀기업) 7년(2030~2036년) 100% + 3년(2037~2039년) 50% 감면

4) 2023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 기업에 대한 감면율(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) 상향 조정은 2024년 국내복귀기업부터 적용되어 2025년 이후 감면실적에 반영

[표 26]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: 법인·소득세, 2026~203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2025년 국내복귀기업	9.8	9.8	9.8	9.8	9.8	9.8	9.8
2026년 국내복귀기업	—	9.8	9.8	9.8	9.8	9.8	9.8
2027년 국내복귀기업	—	—	9.8	9.8	9.8	9.8	9.8
2028년 국내복귀기업	—	—	—	9.8	9.8	9.8	9.8
2029년 국내복귀기업	—	—	—	—	9.8	9.8	9.8
계	9.8	19.7	29.5	39.3	49.2	49.2	49.2

구분	2033	2034	2035	2036	2037	2038	2039
2025년 국내복귀기업	4.9	4.9	4.9	—	—	—	—
2026년 국내복귀기업	9.8	4.9	4.9	4.9	—	—	—
2027년 국내복귀기업	9.8	9.8	4.9	4.9	4.9	—	—
2028년 국내복귀기업	9.8	9.8	9.8	4.9	4.9	4.9	—
2029년 국내복귀기업	9.8	9.8	9.8	9.8	4.9	4.9	4.9
계	44.3	39.3	34.4	24.6	14.8	9.8	4.9

(2) 추계결과

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시, 법인세는 2026년부터 2039년까지 14년간 총 418억원(연평균 3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은 최대 10년(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) 동안 적용되어, 2029년에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9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2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104조의24)	-9.8	-19.7	-29.5	-39.3	-49.2	-49.2	-49.2	-44.3

	'34	'35	'36	'37	'38	'39	누적	연평균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104조의24)	-39.3	-34.4	-24.6	-14.8	-9.8	-4.9	-417.9	-29.9

자.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18조의2)

(1) 추계방법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28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실적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(전망) ¹⁾
관세	0.2	3	14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방법)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간(2022~2024년(전망)) 연평균 감면액(5.7억원)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
(2) 추계결과

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시, 관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억원(연평균 5.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2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관세
(단위: 억원)

	'25	'26	'27	'28	'29	누적	연평균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118조의2)	-5.7	-5.7	-5.7	-5.7	-5.7	-28.7	-5.7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, 박성은, 박지원, 이정훈	박연서
세제분석2과	고은비, 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